

의안번호	2211421
의 퇴 인	이성권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계번호	25E3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 보상금 과세특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9조의15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거주자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관련 지급받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9조의15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본 개정안에 따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관련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라 동 사건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예정
 - － (보상금)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¹⁾
 - － (의료지원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중 그 부상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급(다만, 지급액 산정 등 필요 사항은 대

1)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3조

통령령으로 정함)²⁾

- (생활지원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가능(다만,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³⁾

○ 다만, 현재 부산광역시청이 시내 거주 동 사건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중이나, 동 시외 거주 피해자 인원에 대해서는 추정이 곤란한 상황임

- (의료지원금) 부산시 거주 피해자에게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중
- (생활지원금) 부산시 거주 피해자에게 월 20만원 지급 중

□ 하지만, 향후 관련 법률 통과 등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에 대한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의 비과세 대상인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동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지급 규모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며, 개별 피해자의 소득수준별 동 지급 규모 또한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한편, 현재 동 사건 관련 국가배상 공동소송 1건(정부·부산시 공동피고에 대한 원고 30명, 소송가액 117억원) 진행 중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3)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5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